

제164회 영등포구의회
201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12. 12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86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“고용직공무원”의 근거조문인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나.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4호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11. 5. 23일 공포되어 2011. 8. 24일 시행됨에 따라 폐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급사, 사환, 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기계화, 전산화가 되고 민간 위탁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음.
-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공무원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.
-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우리구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(2011. 5. 23 공포, 2011. 8. 23 시행)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2조 (공무원의 구분)③ "특수 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정무직공무원</p> <p>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동의가 필요한 공무원</p> <p>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</p> <p>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</p> <p>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</p>	<p>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③ "특수 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정무직공무원</p> <p>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동의가 필요한 공무원</p> <p>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</p> <p>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</p> <p>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</p>

<p>·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</p> <p>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</p>	<p>·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</p> <p>4. 삭제 <2011.5.23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</p>
---	---